

2026

# 공정거래법, 약관법 가맹거래사 경제법

엠북 자격증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 종합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2시간 44분 완성

도서명 : 가맹거래사 경제법

ISBN : 979-11-7393-186-4

발간일 : 2026-02-05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mailto:by4782@gmail.com)

정가 : 16,500원



# 가맹거래사 경제법

## [목차]

### 제1편 공정거래법(p4)

제1장 총칙(p5)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p1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p14)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p24)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p53)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p57)

제7장 사업자단체(p62)

제8장 전담기구(p64)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p68)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p75)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p86)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p90)

제13장 적용 제외(p95)

제14장 보칙(p96)

제15장 벌칙(p99)

### 제2편 약관법(p102~123)

제1장 총칙(p102)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p104)

제3장 약관의 규제(p107)

제4장 분쟁의 조정 등(p111)

제5장 보칙(p121)

제6장 벌칙(p122~123)

##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내용

# 제1편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 [목차]

## [용어]

- 주식은 지분 포함
-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

## [약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은 사업자, 사업자단체

취득/소유한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이유없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 제1장 총칙

1~3조

### 1.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 창의적 기업활동 조성,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2. 정의

#### 1)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하는 자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등은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시 사업자로 봄
- 종업원은 계속해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외의 자

#### 2) 사업자단체

- 형태 불문,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이익 증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연합체)

#### 3) 시장지배적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이나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 가격, 수량, 품질,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변경할 시장지위 가짐

-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존재/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 종합 고려해 판단

#### 4)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등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상태

#### 6)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 상기에 준하는 자
-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 영업 전반을 총괄적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 7) 지주회사

가) 주식(지분 포함, 이하 같다) 소유를 통한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 합병, 분할시 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 이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 자산총액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시 전환신고 사유 발생일),
  -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천억(벤처지주회사는 300억) 이상
- (비고) 분할은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나) 주된 사업의 기준

- 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100 이상

**8) 자회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

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나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해 계열회사가 된 때 그 계열회사는 제외

나) 지주회사 소유 주식수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나 동일인관련자 중 최대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많을 것

**9) 손자회사**

- 자회사로부터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 지배받는 국내 회사

가)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나) 자회사 소유 주식수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나 동일인관련자 중 최대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많을 것

- 단,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은 경우는 제외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

- 국가데이터처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 회사로 안 봄

**1) 기업집단**

- 동일인이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 대통령령 기준

1) 동일인이 단독 또는 다음(이하 동일인관련자)와 합해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30/100 이상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친족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 소유 5촌/6촌 혈족, 4촌 인척

-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 생부/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해 총출연금액의 30/10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 한정,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 구성,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라)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부터 라)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은 임원, 개인은 상업사용인과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2) 다음 회사로서 동일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한 회사나 임원 50/100 이상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포함)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 인사교류

a)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 임원 겸임

b)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임직원이 해당 회사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포함

c) 해당 회사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나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

라) 동일인이나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 통상적 범위를 초과해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거래나 채무보증

마)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

## 2) 계열회사

-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때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3) 계열출자

-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 취득/소유

#### 4) 계열출자회사

- 계열출자로 다른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계열회사

#### 5) 계열출자대상회사

- 계열출자로 계열출자회사가 취득/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

#### 6) 순환출자

- 세 개 이상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와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

#### 7) 순환출자회사집단

-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집단

#### 8) 채무보증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보증

가)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나) 보험회사

다)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가 없으면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 3천억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9) 여신

-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과 회사채무 보증/인수

##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사업자가 상품/용역 거래시,
-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

## 3. 국외에서의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 미치면 법 적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4~8조

## 1. 공정위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 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용역 공급/수요 시장에 경쟁 촉진 시책 수립/시행
- 나) 관계 행정기관 장에 경쟁 도입, 시장구조 개선 등 의견 제시
  - 관계 행정기관 장은 공정위에 검토결과 송부
- 다) 업무
  - 시장구조 조사/공표
  - 특정 산업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경쟁촉진 방안 마련
- 라) 사업자등에 업무 수행 자료 요청
- 마) 다른 기관에 사무 위탁 가능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남용행위 못함

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

- 이유없이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나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의 것으로 한정)의 변동에 비해 현저히 상승 또는 근소하게 하락

나. 상품 판매,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

- 이유없이

· 최근 추세에 비추어 상품/용역 공급량 현저히 감소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상품/용역 공급량 감소

다.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

: 직/간접으로 다음 행위에 사업활동 어렵게 함

1)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방해

- 상품/용역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 요소 사용/접근 거절, 중단, 제한

2) 정상적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에 필수 인력 채용

3) 공정위 고시 행위

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

- 직/간접으로 이유없이 다음 행위 해 신규진입 어렵게 함

1)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 체결

2)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 매입

3)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 요소 사용/접근 거절, 제한

#### 4) 공정위 고시 행위

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있는 행위

-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
-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

###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 80억 미만은 제외)

- 가)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frac{50}{100}$  이상
- 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frac{75}{100}$  이상
- 시장점유율  $\frac{10}{100}$  미만 사업자 제외

### 4. 공정위의 시정조치

가. 남용행위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시정조치 명령

나. 남용행위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 1) 합병으로 소멸시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회사가 한 남용행위로 보아 시정조치 명령
- 2) 분할, 분할합병시 분할일, 분할합병일 이전 남용행위를 다음 회사의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 명령
  - 분할되는 회사
  - 분할,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 회사

- 분할되는 회사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시 그 다른 회사
- 3) 새 회사 설립시 기존 회사나 새 회사 중 하나의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 명령

## 5. 과징금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시 공정위가 부과

가) 매출액

- 상품/용역 대가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는 영업수익
-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위 고시에 따라 산정(이하 관련매출액)

나) 매출액에 6/100을 곱한 금액내 부과

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은 20억내 부과

- 영업 개시 않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매출액) 없음
-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 소멸, 훼손 등 객관적 매출액 산정 곤란
- 위반기간, 상품/용역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9~16조

-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 수는 제외

# 1. 기업결합의 제한

가.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기업결합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 제한 못함

- 1) 특수관계인은 회사나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관계
  - a) 사실상 회사 지배
  - b) 동일인관련자
    -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
  - c)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 목적으로 기업결합에 참여
- 2) 기업결합
  - a) 다른 회사 주식 취득/소유
  - b) 임원이나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 임원 지위 겸임(이하 임원겸임)
    - 예외)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 2조 이상 회사(이하 대규모회사) 외의 자
  - c) 다른 회사와 합병
  - d)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나 주요 부분 양수/임차, 경영 수입,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 전부나 주요 부분 양수
  - e) 새 회사설립에 참여
    - 단, 다음은 제외
    -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 목적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외의 자는 참여안함
    -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

나. 다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는 상기 규정 적용안함

: 사업자가 요건 충족 입증